

1. 개정이유

현행 기동복, 활동복, 점퍼, 방한파카, 훈련복, 비행복, 우천활동복에는 "소매표장"을 부착하고 있으나, 정복, 근무복에는 빠져 있어 소방공무원 식별이 곤란함

또한 국내·외 모든 제복공무원(소방, 경찰, 교정, 군인 등) 및 제복착용 근무자(청원경찰, 방호, 경비 등) 역시 정복, 근무복 왼쪽 소매 상단에 휘장, 표장을 부착함

이에 정복, 근무복 왼쪽 소매상단에 "소매표장"을 부착하여 대·내외 업무수행 중 소방공무원 표시 및 조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정복 상의 부착물의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(별표 2)

나. 근무복 셔츠 부착물 종류에 소매표장 추가(별표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개정훈령안

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2017년 1월 1일"을 "2023년 7월 1일"로, "12월 31일"을 "6월 30일"로 한다.

별표 2 정복 상의의 금속이름표란 다음에 정복 상의의 소매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매표장	좌측 소매 상단(균형에 맞게)	자수와펜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

별표 2 근무복의 소방표장란 다음에 근무복의 셔츠의 소매표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소매표장	좌측 팔 어깨 끝에서 3cm 아래	자수와펜
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

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정복 상의	2. 근무복 셔츠
	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복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착용하던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 착용할 수 있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재검토기한) 소방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 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 령에 대하여 <u>2017년 1월 1일</u> 기 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 년째의 <u>12월 31일</u> 까지를 말한 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	제11조(재검토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3년 7월 1일</u> --- ----- ----- <u>6월 30일</u> ----- ----- -----.